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평가 분석: 한·미·일 비교

A Study on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omparing to Korea, USA and Japan

김태황(Kim, Tae Hwang)*·조정환(Cho, Jung Hwan)**

ABSTRACT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encompasses a follow-up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n bribery abroad. Domestic compliance law has a direct impact not only o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authorities, but also on government agencies that exercise public power in taxation and collection,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public companies participating in contract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periodic and has no enforcement, but has an indirect impact on the domestic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participating member countries. Since the Convention can be a major competitive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ot only in terms of law enforcement, but also in global competition structure, appropriate peer review and pressure are needed among the OECD DAC members. For Korea, we released the fourth evaluation report in December 2018,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implementation, non-compliance, and partial fulfillment factors are appropriate through the 1st Assessment Report and the Mid-term Implementation Review Re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anti-corruption fun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nti-bribery treaty by analyzing 4 evaluations and inspections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ree evaluations of US and Japan.

Key words : anti-corruption policy, anti-bribery convention, anti-bribery implementation report, implementation evaluation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cothk@mju.ac.kr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연구교수, chojh0320@korea.ac.kr

I. 서론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2001년에 부패방지법, 2016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OECD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1997)과 UN 반부패국제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3)의 원년 체결국으로써 동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조사 결과(2019년 1월 발표)에 따르면¹⁾, 한국은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공동 45위로서 남미 우루과이와 중동 UAE(공동 23위), 브루나이와 대만(공동 31위)보다 월등히 낮으며, 국민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보츠와나(34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에 해당된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법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음을 방증한다. 물론 2017년의 경우 54점, 51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제12조 본문과 주해서에 따르면, 체결국들은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 실무 작업반이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감시와 평가는 체결국의 자체 평가(1단계)와 체결국들의 상호 평가(2단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행된다(OECD, 2011, p.11, p.19). 이행 평가와 후속 조치 보고서가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체결국들은 물론 비(非)체약 국가들에게도 부패 인식 수준을 향상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 기반을 개선해 나아가는 근거를 체계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별 이행 수준과 조치 과정이 상이할 수 있지만 동료국들 간 상호 검토와 감시 체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직면한 개별 국가와 기업들이 공정한 국제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규범과 원칙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관건은 검토와 평가가 얼마나 해당 국가의 합리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에 노출된 국제 상거래 현지국의 상거래 관행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개별 국가의 특정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호 검토와 대책 조정에 대한 연구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 이행

1) <https://www.transparency.org/cpi2018#results>

에 대해 네 차례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로 제시한 권고사항들과 이행 점검사항들을 단계별 및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미국과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 및 이행 조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반부패 인식과 정책 이행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II. 논의와 연구의 방향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국제적 부패행위 방지 체계에 대한 법학적, 행정학적, 경제학적 학술 연구는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발전되어 왔으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윤리적 검토 수준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체약국의 국내 이행 법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하는 논지가 중심이었다(장근호, 1999; 최경규, 2001; 장준호, 2002; Moran, 1999; Hamra, 2000; Gordon et al., 2001; Bishop, 2004; Sanyal, 2005). 이 가운데 장근호(1999)는 뇌물방지협약과 국내 이행 조치의 실질적인 집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금융, 회계, 감사 및 세무 기준을 확립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기업 내부적으로 기업윤리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Bishop(2004)은 뇌물 공여 행위는 기업 활동과 국가 제도의 윤리적 관행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상관성이 있다고 고찰하였다. Sanyal(2005)도 뇌물 공여 행위에서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의 상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뇌물 방지에 관한 제도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라영재(2007)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의 개선과 시민사회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오필환(2007)은 지방자치단체의 읍부즈만 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명재진(2007)은 주민의 소송, 투표, 소환, 감사 등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주(2008)는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자본의 기반을 고찰하면서 부패 사슬과의 연관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장진희·조은경(2012)은 우리나라의 국내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뇌물방지협약의 처벌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하면서 법제도적 관점에서 이행법에 따른 양형 기준 확립, 기업의 뇌물방지 준법과 윤리 준수 체계 정착 등 전반적인 뇌물방지 시스템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안상욱(2012b)은 OECD 뇌물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약국들이 국내 이행 법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 집행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주·황광선(2014)의 연구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무역 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여성 정치가의 영향력과 언론의 자유 등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김태황(2008)은 국제통상학의 관점에서 다자주의적(multilateral) 통상 협상과 지역주의 통상 협상의 결과로 글로벌 공정 경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뇌물방지협약의 동료국 간 검토, 평가, 압력이 유효한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국제무역과 연계된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상겸 외(2017)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부패 수준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0.40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3~3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세계은행(World Bank 그룹)의 부패통제지수를 활용하여 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하는 추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적 부패 논의를 국제통상 체제와 결과 분석으로 확장한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기여도라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별 부패 방지 사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적, 지역학적 연구 범주에서 단절적으로 이행되어 왔다(유문무, 2009; 안상욱, 2012a; 허일태, 2015; 조재현, 2016). 다양한 학술적 관점의 논의가 학제간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 비교 연구는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체약국들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의 이행 평가와 조치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제 상거래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대적 수준과 구성 요인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OECD가 각 국가별로 제1단계, 제2단계, 제2단계 후속조치, 제3단계, 제3단계 후속조치, 제4단계 등 여섯 번 발표한 단계별 이행평가 보고서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9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4년 및 2018년에 각각 발표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1999년, 2002년, 2005년, 2010년 및 2012년이 각각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는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11년 및 2014년에 각각 이행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행 권고 사항들은 각 단계별 항목별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고찰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연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제3단계 권고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행 평가와 조치의 내용들이 국내 법제도와 정책 개선 사항과 직결되므로 병행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이행 평가와 조치의 상대적 비교 분석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Ⅲ. 한국에 대한 이행 평가와 조치

1. 이행 평가와 권고

OECD 실무 작업반의 한국에 대한 1단계 이행 평가 결과는 9가지 권고사항으로 집약된

다. 신속한 국내 이행법 제정과 OECD 협약 준수 의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뇌물과 관련된 개념과 법 적용의 불명확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단계 이행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인 예방과 탐지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로써,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징후를 기업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사전적으로 탐지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한 점은 1단계 권고 수준에 비해 상당히 심화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공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부 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제도와 정책을 통해 뇌물 공여의 유인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도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기소와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로는 국내 이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강조되었다.

3단계 이행 보고서에서는 북한 개성공단 사업 수행에 따른 상거래가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국내 이행법 또는 형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2011년 당시 이미 체결된 상태의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한국의 양자간 국제 통상협정에서도 개성공단을 국외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한국 국내와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국제통상 협약의 관점에서는 개성공단의 상거래와 관련된 뇌물행위가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외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행위에 적용하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개성공단 사업 운영과 관련된 남북 정부의 경제적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면 뇌물행위 자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협약 적용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내부의 통제, 윤리 강화, 협약 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액이라도 급행료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는 2단계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등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는 정부 관할 기관들의 관련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라는 권고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할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3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점은 2단계에서의 해외 뇌물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을 한층 심화시킨 수준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의 보다 효과적인 예방 조치로써 과세 권한을 강화하고 사전적인 탐지 역량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2단계 권고를 진일보시킨 것으로 고찰된다. 기업 회계 및 감사 체계의 개선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뇌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정하라는 권고는 국내 형법의 형평성있는 적용의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 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 평가 보고서는 이전 세 차례 평가 보고서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3단계까지 포괄적으로 권고한 항목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를테면 회계 오류 행위, 뇌물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 과정, 법적 제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구분하여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도 특징적이다. 셋째, 세금 공제, 세무조사 등 국세정의 조세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넷째, 공공 조달, 공적개발원조, 공기업 활동 등 공익 관련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뇌물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교육 연수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점도 특징적이다.

〈표 1〉 한국에 대한 단계별 이행 평가와 조치

평가 단계(연도)	주요 평가 및 권고 내용
1단계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신속한 국내 이행법 제정 및 협약의* 요구사항에 대한 양호한 준수 · 국내 자금세탁법** 뇌물행위는 포함하지 않으며, 국내법 위반에 사용된 “뇌물” 용어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협약의 적용에 적확할 지를 이행 과정에서 점검 · 소액 또는 기타 이익의 예외 조항에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 뇌물을 통한 제3자 이익 발생의 경우 법 적용의 불명확성 · 뇌물이 변형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몰수 가능성 여부의 불확실성 · 한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관할 권의 문제 점검 필요
2단계 (2004)	<p style="text-align: center;">효과적인 예방과 탐지 보장을 위한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소/사법 기관의 협약과 이행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준비 (⓪) · 독립된 외부 감사 또는 관리위원회가 뇌물 공여 징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 (○)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에게 해외뇌물 혐의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 부여 (●) · 한국부패방지위원회****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⓪) · 이행법 위반이 발생할 때 한국국제협력단의 정책과 절차 공개 (○) ·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협약 및 이행법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시 담당기관에 보고하도록 보장 (●) · 형법 제20조의 사회적 관습이 해외뇌물 행위에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 ·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손비불인정으로 세법 개정 (●) · 뇌물의 손비불인정과 자금 유출에 대한 조세심사원 교육/훈련 강화 (●)
	<p style="text-align: center;">효과적인 기소와 처벌 보장을 위한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법 제3조1항이 제3자 뇌물 상황도 포괄하도록 명확화 (○) · 법무부가 발행하는 설명 매뉴얼이 협약과 이행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안내 내용이 되도록 보장 (●) · 뇌물수익의 몰수가 없다면 벌금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설득력이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보장하고 허위회계와 부정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 · 뇌물수익 몰수와 집행유예를 포함한 이행법 위반 처벌에 대한 통계 정보 집계 (●) · 개발원조와 민영화의 담당 기관이 해외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가능한 비형사적 처벌과 같은 적절한 대응책을 보장 (⓪)

<표 계속>

3단계 (2011)	효과적인 조사, 기소, 처벌 보장을 위한 권고	· 북한이나 개성공단 관련 뇌물을 이행법 또는 형법에 적용시키는 법체계의 적절한 추진 (○)
		· 2009년 부패방지 권고안에 따른 급행료 정책과 접근방식에 대한 주기적 검토 (●)
		· 기업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액 급행료의 금지 또는 저지 권장 (●)
		· 이행법 위반에 대한 법 집행당국과 민간 법인의 인식 제고 (●)
		· ①법체계에 따라 개인/법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설득력이 있도록 적절한 단계적 이행, ②적정한 뇌물 수익 몰수 및 관련 법체계 개선 (○)
		· 실무반에 초국가적 뇌물 수사를 보고하고, 협약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공조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수사 기록 보존 (●)
		·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을 포함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의 지식정보 수집 역량 강화 (●)
		· 사전 조사 단계의 다양한 정보 수집 강화 (●)
	효과적인 예방과 탐지 보장을 위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법 위반 기록을 사법당국에 이송하기 위한 명확한 처리 기준 정립과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 개정 (●)
		·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뇌물공여 예방과 탐지의 진전 (●)
		· 회계/감사 체계를 이용한 뇌물공여 예방과 탐지의 진전 (●)
		·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적절한 내부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 채택(우수사례 참조) (●)
		· 국세청의 예방과 탐지를 위한 과세 조치와 혐의 보고 기능 강화 (●)
		· 일반기업과 공공 계약 주체가 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보다 조화로운 접근방식의 뇌물방지 가이드라인 적용 (●)
		· 혐의 확증 기업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 (●)
		· 공익 고발자 보호 조치의 명확화 (●)

<표 계속>

4단계 (2018)	국외 뇌물행위 탐지 관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세탁 방지 조치 관련 ①비금융기관도 포함하도록 제도의 확대, ②사례 발간을 통해 해당 업종의 인식 제고 ③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방법론과 재원 보장 · 공공기관의 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확하고 정규적인 안내와 연수 보장 · 언론의 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①국내외 언론의 뚜렷한 뇌물 감소 보도에 대한 평가, ②국내외 언론보도 감시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 확보, ③언론의 보도와 정보 접근의 자유 보장 · 회계사와 감사의 탐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식 제고와 연수 강화
	국외 뇌물행위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공무 수행자들의 뇌물행위에 대한 법체계의 적절한 진전 · 국외 뇌물행위 판단 기준이 협약 제1조에 부합하여 해석되도록 ①국제 상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하고, ②현지 관습, 당국의 용인된 공여, 필요하다고 요구된 공여 등이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③이행법에 근거한 뇌물행위가 현지법 위반과 별도로 성립되도록 함. · 회계 오류 행위에 대해서 ①국의 뇌물공여 또는 은폐 목적의 회계 오류의 책임 강화, ②조사와 기소 강화 및 행정 당국의 인식과 연수 강화 · 국외 뇌물에 근거한 자금 세탁 대응조치의 강화 · 조사와 기소 관련 ①관할 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보 공유 및 역량 갈등 해소의 적절한 조정, ②사전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출처의 정보 수집 활용 확대, ③국내 뇌물조사에 활용한 도청 수단의 가용성 확대, ④충분한 조사시간 확보, ⑤개인에 비해 법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범령의 범위 확대, ⑥국의 뇌물행위의 기소를 제한하는 결정이 협약 제1조에 위배될 경우에는 수용 불가, ⑦기소자(검사)의 정치권, 법무부나 대검찰청으로부터 간섭 배제 · 개인에 대한 제재 관련 ①벌금 인상의 범령 개정, ②개인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재의 강화 및 뇌물과 뇌물 수익의 몰수 · 국제 공조 관련 ①상호법률지원단 파견의 진전, ②적시의 범죄인 인도
	법인 책임 관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대한 제재 관련 ①벌금 인상의 범령 개정, ②법인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든 제재 수단의 동원 및 뇌물과 뇌물 수익의 몰수, 관련 대책 수행을 위한 연수 시행 · 계약 참여 법인들의 국외 뇌물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법 준수 유도
4단계 (2018)	기타 조치 관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조치 관련 ①국의 뇌물행위와 연관된 지출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공제 제외, ②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령 해석의 명확화, ③이행법 위반에 대한 국세청 공무원의 탐지 역량 향상 특별연수, ④뇌물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공제 방지를 위한 기소 당국과 국세청의 정보 공유 · 공익 관련 ①다자간 금융기구들의 공공 조달 금지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상시 점검 유도, ②조달청, KOICA 등 공공 조달 계약 기관들의 적절한 반부패 내부 통제, 윤리, 공익 추구 기업들의 준수 유도, ③ODA 관련, KOICA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제휴하여 ODA 계약자들이 뇌물행위 없었음을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담당 직원들의 인식 제고와 연수 강화

주: 1) * 협약은 OECD 뇌물방지협약을 지칭한다.
 2) **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칭해서 “자금세탁법”이라고 별칭한다.
 3) *** 국내 이행법의 예외 조항(제3조 2항b)은 2014년 10월 15일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4) ****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공사, 한국부패방지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칭되었으나 보고서 원문 작성 당시 명칭을 그대로 명시하였다.
 5) (○), (●), (●) 은 각각 해당 권고 사항에 대한 단계별 후속조치 평가(2단계의 경우 2007년 보고서, 3단계의 경우는 2014년 보고서) 결과 불이행(○), 부분 이행(●), 완전 이행(●)을 나타낸다.
 자료: OECD, 각 단계 평가 보고서와 이행 점검 보고서, 1999, 2004, 2007, 2011, 2014, 2018.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OECD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들은 네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내 이행법 뿐만 아니라 관련 형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 이행 보고서에서 매우 신속한 국내 이행법 제정과 협약의 양호한 준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협약의 지속가능한 확장적 이행을 요청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법의 개선에 유익성을 부가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협약 이행을 통해 국내 경제 관련 법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를테면 뇌물 공여에 지출된 자금에 대한 손비불인정의 세법 개정은 뇌물 공여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과 형량을 규정한 이행법을 보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및 경영 활동의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국내 세법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공익 제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권고도 동일한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자금 세탁법’으로 통칭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행위의 개념을 협약의 개념과 조화로운 일관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도 협약과 국내법의 실효적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정부 당국과 기업 감시 집단의 반부패 인식과 윤리적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뇌물 공여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탐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 관리 조직의 부패 인식도를 높이고 뇌물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공공 차원에서는 조사 및 기소 담당 기관의 사전적 정보 수집 활용 확대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조사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행정 당국과 기업에 대한 연수 강화의 권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뇌물 공여 주체로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 조사, 기소, 처벌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인 참여자들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권고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거나 계약하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청 등 공공기관도 해당 기업이 반부패 윤리와 공익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넷째, 법 집행 강도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점이다. 특히 4단계에서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국세청이 관련 조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상호법률지원단 파견, 벌금 인상, 뇌물 수익의 몰수, 적시의 범죄인 인도 등 행정적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여 협약과 이행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였다.

2. 이행 조치

한국은 적극적인 이행 조치를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국은 2단계 이행 평가와 권고에 대해, 7개 항목은 완전하게 이행하였고 3개 항목은 부분적으로 이행한 반면에 불이행 건수는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 상거래 기업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공공기관들의 감사 권한을 확대했고, 기업이

협약과 이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담당기관에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사회적 관습과 뇌물 공여 행위가 상충되지 않도록 형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세법을 개정하여 뇌물의 손비 불인정을 확정했다. 또한 조세 심사원의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도 강화하였다. 반면에 독립된 관리위원회의 뇌물 공여 징후 보고, 이행법 위반 관련 정보 공개, 허위 회계와 부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3단계 이행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3단계의 총 16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10건은 적극적으로 이행되었고 4건은 부분적으로만 이행되었고 나머지 2건은 불이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행료 정책의 개선, 다양한 정보 수집 역량의 강화, 기록 보관 등의 권고는 완전하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익 제보자 보호 확대를 위한 법도 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뇌물 방지 가이드라인의 적용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에 공여하는 뇌물 성격의 자금 지급에 대해 이행법 또는 형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한 점과 뇌물 수익을 몰수하도록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사법 당국과 민간 법인의 뇌물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 사전 조사 단계의 정보 수집 역량 강화, 국세청의 조세 조치 강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의 기능 강화 등은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미국에 대한 이행 평가와 조치

1. 이행 평가와 권고

OECD는 미국에 대한 1-3단계 이행 평가와 후속 조치 진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 3단계 후속 이행 평가에서는 3단계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을 높게 평가하였다. 해외 뇌물 공여 행위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경찰 수사 조직의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수사 사례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이를테면 다양한 민간 기업의 활동에 대한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사전적인 조사활동을 유효하게 활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사전적인 조사활동 과정에서 미국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소송협약(Plea Agreements), 기소유예협약(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불기소협약(Non-Prosecution Agreements), 기업 감시 약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단계 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권고 사항은 조사, 기소, 처벌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및 기소 기한 조정,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회색지대의 해소, 불기소와 기소유예 관련 정보 공개와 범죄 수단 매뉴얼 재점검, 무기 수출 허가 거부의 국외 적용, 해외 뇌물 공여 범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문서 상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에 대한 권고사항들은 협약과 이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 방지의 목적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미국에 대한 3단계 이행 평가와 조치(2010년)

권고 항목	주요 평가 및 권고 내용
효과적인 조사, 기소, 처벌 보장을 위한 권고	· 적절한 조사와 기소에 충분한 기한 보장 (●)
	· 뇌물 방지 효과 관련 ①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려한 회색지대 정화(●), ②합리적인 선의의 지출 사례를 포함한 이행법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③위반 행위의 동인이 해외 사업의 획득/유지인지 다른 부당이익 추구인지의 해석과 관련된 범죄수단 매뉴얼 재점검(●)
	· 불기소협약(NPAs)과 기소유예협약(DPAs) 관련 ①두 협약에 의한 뇌물 방지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 ②DPA 또는 NPA 활용의 세부적 선택 조건, 기간, 감시 근거 등의 공개(●)
	· 뇌물에 의한 무기 수출 허가의 거부가 국내외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적절한 진전(●)
효과적인 예방과 탐지 보장을 위한 권고	· 뇌물공여 행위 예방과 탐지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인식 제고 (●)
	· 문서화와 기록의 이행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제고 (●)
	· 급행료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의 명확화 (○)

주 : (○), (●), (●) 은 각각 해당 권고 사항에 대한 단계별 후속 이행 조치 평가의 결과로 불이행(○), 부분 이행(●), 완전 이행(●)을 나타낸다.

자료 : OECD(2010),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OECD(2012), "United States: Follow-up to the Phase 3 Report & Recommendations"

2. 이행 조치

OECD 권고안에 대한 미국의 후속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3단계 후속 조치 이행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p.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0년 10월 3단계 평가 보고서 승인 이후 2년 간 33건에 대해 약 3,4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산출했으며, 법무부는 최종적으로 31건에 대해 약 7,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이행 보고서에서 제시된 총 10건의 세부 권고사항에 대해 미국은 2년 동안 7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행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반면에 불이행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불이행 사항은 세금 공제 정책의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금 지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행 조치는 개인과 기업의 뇌물 방지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 결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외 뇌물 공여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 의지와 판단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V. 일본에 대한 이행 평가와 조치

1. 이행 평가와 권고

OECD는 일본에 대한 1-3단계 이행 평가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후속 이행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2단계에 이어 3단계 이행 평가에서도 조사, 기소 및 처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법 개정, 제도적 장치 마련, 대외 협약 체결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뇌물 공여 범죄의 예방과 탐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처와 조세 당국 및 공공 금융기관의 감시 감독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뇌물 공여 범죄의 예방과 사전 탐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주요 권고 내용이었다.

3단계 평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수사, 기소, 처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는 단계적인 처벌 강화, 뇌물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공조 강화, 새로운 조사 기법 도입, 검찰청 특별조사국 운영 보강, 사법 당국의 경찰청 정보 활용 체계 개선, 자금 세탁 처벌, 교역국들과 법적 지원과 조세 정보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법 제도적 기반의 보강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기법의 도입이나 실질적인 특별조사국 운영 등의 내용도 권고함으로써 해외 뇌물 공여 범죄에 대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협약 이행 의지와 실행 방안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사전 탐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탐지 역량과 기업의 회계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소액 급행료 지급 관행에 대한 시급한 금지, 경제무역산업성(省)과 조세 당국의 사전 탐지 노력 강화, 회계 또는 감사 전문직의 뇌물 공여 범죄 인식 제고, 관련 문서와 기록 관리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법의 효과 분석, 공공 금융기관의 수출신용 지원의 뇌물 공여로의 오용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권고는 일본 개인과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나 의무

부과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예방과 탐지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간접적인 여건 조성의 측면이 우선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에 대한 3단계 이행 평가는 2005년 2단계 평가가 뇌물 공여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화를 강조한 것에 비해 조사와 기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 조세 당국, 공공기관과 기업의 범죄 예방 수단을 각기 강화하도록 권고한 점에서 구체성과 실질성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일본에 대한 3단계 이행 평가와 조치(2011년)

권고 항목	주요 평가 및 권고 내용
효과적인 조사, 기소, 처벌 보장을 위한 권고	· 법체계에 따라 개인/법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설득력이 있도록 적절한 단계적 이행 (○)
	· 뇌물 수의 몰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의 시급한 조성 (○)
	· 뇌물공여 방지를 위한 경제무역산업성(省)과 다른 부처 및 기관들과의 공조 균형 강화 (●)
	· 조사와 기소 관련 ①비강압적인 새로운 조사 기법 도입을 24개월 이내 보고(●), ② 조사 체계의 강화를 위해 경제 금융 범죄에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관할 검찰청의 특별조사국 운영 강화(●), ③사법 당국이 경찰청의 일본금융지능센터(JAFIC)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해외 뇌물공여 과정의 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구성범죄와 범죄과정 통제 처벌법의 긴급한 개정 (○)
	· 교역국들과 상호범죄지원(MLA) 조약 등의 타결 지속 (●)
	· 해외 뇌물공여 관련 조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양자간 조세 협약 체결 (●)
효과적인 예방과 탐지 보장을 위한 권고	· 소액 급행료 지급 정책과 접근방식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시급한 금지 추진 (●)
	· 경제무역산업성(省)의 해외 뇌물공여 행위 방지와 탐지 역할 강화(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게시, 중소기업 참여 적극 유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평가) (●)
	· 회계 및 감사 체계 관련 ①관련 전문직의 뇌물공여 범죄 인식 제고(●), ②금융상품 거래법(FIEA) 적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③해외 뇌물공여 관련 문서와 기록의 오기(誤記)로 기업 재무보고에 오류 발생시 명확한 해명(●)
	· 다양한 세금 공제에 은닉된 뇌물에 대한 조세 당국의 탐지 강화 조치 (○)
	· 해외 입무 수행 연락소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 특별 연수 시행 (●)
	·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효과성 연구 관련 진척도 보고 (●)
	· 공적수출신용 지원과 연계된 뇌물공여 행위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 투자보험(NEX)이 방지하고 탐지하는 노력의 향상 (●)

주 : (○), (●), (●) 은 각각 해당 권고 사항에 대한 단계별 후속 이행 조치 평가의 결과로 불이행(○), 부분 이행(●), 완전 이행(●)을 나타낸다.

자료 : OECD(2011),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Japan" OECD(2014), "Japan: Follow-up to the Phase 3 Report & Recommendations"

2. 이행 조치

일본에 대한 OECD의 3단계 후속 조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가 작업반은 일본의 협약 이행 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OECD, 2014). 요컨대 해외 뇌물 공여 범죄에 초점을 두어 탐지,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할 당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배치와 우선순위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뇌물을 공여한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한 임원에 대해 벌금 50만엔을 부과했는데²⁾,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도 않았다(전게서, p.7, p.9). 더욱이 일본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뇌물 수익을 몰수할 법적 기관은 설립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전게서, p.12-13).

3단계 이행 보고서에서 명시된 총 18건의 세부 권고사항 가운데 일본이 완전히 이행한 권고는 6건에 불과하였고, 부분적 이행은 8건에 해당하였으며, 불이행 건수도 4건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처벌 강화, 뇌물 수익 몰수, 뇌물 공여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 등 법 개정과 연계된 권고사항은 모두 불이행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OECD 평가 작업반은 3단계 후속 조치 이행을 평가한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 부분이행과 불이행으로 평가된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1년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VI. 결론

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회원국의 국내 이행법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 회원국들의 국내 이행법은 범위와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회원국 간 속도와 정도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한·미·일에 대한 OECD의 3단계 이행 평가와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상당히 진전된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 이행법의 보다 엄정한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3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4단계에서도 정부, 공공기관, 기업, 언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엄밀한 뇌물 방지 의식의 제고와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해외 뇌물 방지 수준이 높고 후속 조치 이행 수준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OECD 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내 이행법의 긴급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OECD 협약과 국내 이행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행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뇌물

2) 당사자 전직 임원은 뇌물 공여 행위 이후 약 1년간 해외 체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었으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방지의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국익을 위한 경제활동의 연장선에서 인식하여 국내에서의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 적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엄정한 실형 선고와 민간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조사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이 참고하여 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은 현지 여건과 기업문화 및 경영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보다 엄밀한 분석과 조사 방식을 적용하여야 국가별 기업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민관 공동 사업 추진의 경우 공공 외교적 활동의 범위와 민간기업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와 조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감사 보고 체계를 국내 이행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겸·박순찬·강민지,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김태황,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제적 고찰: 동료국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3권 제4호, 89-100, 2008.
- 김흥주·황광선, OECD 국가의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1호, pp.633-664, 2014.
- 라영재, 반부패 전략과 정책의 부패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3권 제3호, 37-60, 2008.
-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1-20, 2007.
- 심재승,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2권 제3호, 111-130, 2007.
- 안상욱,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7권 제3호: 147-165, 2012a.
- _____,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 법규 집행: 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7권 제4호: 61-80, 2012b.
- 오필환, 음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2권 제2호: 17-44, 2007.
- 유문무,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제11권 제3호, pp.175-210, 2009.
- 이정주,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3권 제2호: 35-52, 2008.
- 장근호, OECD 부패방지협약과 이행 조치에 관한 논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9년 7월호, 19-36, 1999.
- 장준호, 「주요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장진희·조은경,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현황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 제17권 1호, 25-58, 2012.
- 조재현,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통제를 위한 법제와 기구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제47권 제2호, pp.95-120, 2016.
- 최경규, 「국제적 부패 논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1.
- APEC. “Anti-Corruption Policies in Asia and the Pacific”, APEC Meeting of Anti-Corruption Experts, Santiago, Chile, 25-26 September, 2004a.
- _____.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PEC Meeting of Anti-Corruption Experts, Santiago, Chile, 25-26 September, 2004b..
- Arrow, Kenneth J. The Limits of Organization, New York · London, W · W Norton & Company, 1974.
- Bishop, John D.. “Crossing the Boundaries of Obligation: Are Corporate Salaries a Form of

- Bribe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55:1-11, 2004.
- Bonucci, Nicola and Moulette, Patrick,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10 Years on", *OECD Observer*, 264/265: 23-24, 2008.
- Gordon, Kathryn, Miyake, Maiko, "Business Approaches to Combating Bribery: A Study of Codes of Conduct",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34: 161-173, 2001.
- Hamra, Wayne.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OECD Convention: Benefits and Limitations", *Business Economics*, October: 33-46, 2000.
- Martin, K. D., Cullen, J. B., Johnson, J. L. and Parboteeah, K. P.. "Deciding to Bribe: A cross-Level Analysis of Firm and Home Country Influences on Bribery A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6): 1401-1422, 2007.
- Moran, Jon,, "Bribery and Corruption: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8(3): 141-150, 1999.
- OECD,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hase 4 Report: Korea", 2018.
- _____, *The Detection of Foreign Bribery*, 2017.
- _____, "Korea: Follow-up to the Phase 3 Report & Recommendations", 2014.
- _____, "Japan: Follow-up to the Phase 3 Report & Recommendations", 2014.
- _____, "United States: Follow-up to the Phase 3 Report & Recommendations", 2012.
- _____,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 2011.
- _____, *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Related Documents*, 2011.
- _____,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Japan", 2011.
- _____,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2010.
- _____,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Annual Report 2007*, 2008.
- _____, "Korea: Phase 2, Follow-up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se 2 Recommendations", 2007
- _____. *Corruption: A Glossary of International Criminal Standards*, 2007.
- _____, "Korea: Phase 2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1997 Recommendations on Combating Bribery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04.
- _____, "Korea: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1997 Recommendation", 1999.
- Sanyal, Rajib, "Determinants of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59: 139-145, 2005.
- Spicer, A., Dunfee, T. W. and Bailey, W. J. "Does National Context Matter in Ethical Decision Making?: An Empirical Test of Intergrative Social Contracts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3): 610-628, 2004.
- Williamson, Olivier E..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vol. 87(3): 548-577, 1981.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

경제협력개발기구 홈페이지(뇌물방지협약) <http://www.oecd.org/daf/nocorruption/convention>

투고일자 : 2019. 03. 18

수정일자 : 2019. 03. 28

게재일자 : 2019. 03. 31

<국문초록>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평가 분석: 한·미·일 비교

김태황 · 조정환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외 뇌물행위에 대해 협약 이행과 국내 이행법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포괄하고 있다. 국내 이행법은 조사와 기소를 맡은 당국뿐만 아니라 조세와 징수 관련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과 국제 상거래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과 계약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협약 이행 점검과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참여 회원국의 국내 법, 제도,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4차례 평가 및 점검 내용을 미국과 일본의 3차례 평가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뇌물방지협약의 부패 방지 기능과 이행 평가의 적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3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4단계에서도 정부, 공공기관, 기업, 언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엄밀한 뇌물 방지 의식의 제고와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해외 뇌물 방지 수준이 높고 후속 조치 이행 수준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일본은 OECD 협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내 이행법의 긴급한 개정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OECD 협약과 국내 이행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행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뇌물 방지의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반부패정책, 뇌물방지협약, 뇌물방지 이행보고서, 이행 평가

